

준용한다.

제5조(방법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중 방법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제7조(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8조(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제9조(휴직)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고용직공무원이 제9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휴직기간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보건소 및 동사무소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이하 "휴직자정원관리단위"라 한다)으로 하여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정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조정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정원관리단위기관의 고용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명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992.5.10까지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

1종	2종	경노무	근무상한연령
방법원			53세
		사 환	23세

비고: 방법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에 대한 용자지원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사용시설자금: 기존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 도시가스 사업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시중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제5조(용자대상자)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자금: 수용가
2. 공급시설자금: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제6조(용자범위) 이 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자금: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50% 이내
2. 공급시설자금: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비의 70% 이내

제7조(이자율등) 용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자금: 년리 8%(3년 균등분할상환)
2. 공급시설자금: 년리 8%(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제8조(용자신청절차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가 기금을 용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기금용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기금의 용자지급여부를 용자대상자에게 통보 및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용자토록 추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등

③기금의 용자지급 통지를 받은 용자대상자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시설 안전 검사를 필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용자금을 요청한다.

제9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은행에 대한 감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은행"으로 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 달성 시까지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